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질의사항(서울중앙지방법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의 건

1.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제도에 관하여

-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제도가 무엇인지.
- 이 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인신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피수용자에게 수용상황과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수용자 측의 확인과 입장표명으로 사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수용상태와 수용의사에 대해서 법원이 피수용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데, 피수용자를 소환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용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한 것이 인신구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수용자와 피수용자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서 대립되는 이해관계 당사자이고, 수용자에 의해 피수용자가 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의사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피수용자의 의사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피수용자들에게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수용자인 국정원 측의 확인서, 국정원이 위촉한 인권보호관의 진술서만으로 피수용자들의 상태와 의사 확인을 갈음함

-통상 가족관계, 위임관계, 위임의사를 확인할 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이에 대한 엄격한 증명(소명)을 요하는지.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수용자를 인신구제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1509)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한다는 취지.

-현행법상 시설의 명칭(수용시설, 보호시설 등)을 불문하고 피수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가 문제될 때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법 제2조 제1항).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북한이탈주민이 수용되는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일단 수용되면 통일부 혹은 국정원에서 조사 진행과정(법상 180일까지 가능)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사실상 완전히 차단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직접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로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 인신구제사건 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 피수용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였고,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인해 심문기일이 중단되었는데, 기피신청이 기각되어서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면,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해야하지 않는지 (어느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는지)

인신보호규칙

제11조(피수용자의 출석) ①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용자 기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피수용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호송·감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수용자가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심문기일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 및 수용자의 답변을 들은 후 소명방법에 대하여 조사한다.②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 인신보호법

제10조(심문기일) ①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

1.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3. 수용의 사유
4.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 시기
5.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

2016. 6. 21.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기일 통지서는 6. 14. 피수용자들에게 송달됨.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6. 19.부터 있었고, 심문기일 당일 피수용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수용자 측의 설명이 있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한 바 없음. 이런 상황에서 구제청구자의 진술이 있기 전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심문기일이 중단됨.

-인신구제청구(5. 24. 제기) 이후 6. 21. 심문기일 진행, 당일 기피신청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7. 22.)이 있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과정에서 담당판사의 의견서를 제출받아야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기피신청 후 1달 만에 기각결정을 하였고, 다시 약 3주 후인 8. 11. 보정명령, 이후 9. 9. 각하결정을 하였는데, 국정

원 측 주장에 의하면 그 사이 피수용자들에 대한 퇴소조치가 있었다고 함.

->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과정에서 판사 의견서를 받지 않은 점, 시간을 지체한 점에 대한 책임에서 법원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법원 재판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이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재판 시작 전부터 비공개 재판을 이유로 법정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일단 개정된 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에 방청인들을 퇴장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 당시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막았음

-실제로 피수용자들이 수용해제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이 수용자의 확인서와 수용자의 입장을 옮긴 언론보도만 있을 뿐인데 이를 토대로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피수용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퇴소하였다는 국정원장의 확인서만 제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귀가 사실로 인정된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제출한 가족관계 소명자료는 이것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배척되었음. 수용자인 국정원장의 확인서만으로 피수용자들의 수용 해제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제청구자들의 가족사진, 공민증, 위임장 작성 영상들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확인하지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의 청구라고 판단함.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에 대해 이렇게 달리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비공개 절차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 아닌지.

-이 사건 각하결정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절차진행이 타당했다고 보는지.

수용자인 국정원 측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퇴소하였다는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사항-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하였는데, 법원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라도 사실 확인을 위한 시도라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법원이 이러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법원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호인들은 위 조항에 따라 통일부에서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실제 가족관계와 현재 피수용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구석명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함.